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성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,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지원대상 및 범위(안 제3조)

- 지원대상 :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

※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, 청소년 가장, 65세 이상 노인, 치매환자, 마을회관 및 경로당

- 지원범위 : 가스, 전기, 보일러 관련 노후시설, 소화기 설치 등

○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○ 예산조치 : 총 157백만원 정도(5년간 균분지원)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8.27. ~ 9.17.)

○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 - 5882(2018. 8. 7.)〕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 - 44061(2018. 8. 8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수급자, 장애인, 65세이상 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주택과 마을회관, 경로당 등이 소화기 및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음에 따라 화재로 부터 인명,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

○ 조례의 목적, 용어 정의, 지원대상 및 범위, 지원신청 및 결정 방법,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화재취약계층 등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